태양전지용 생산설비 부분품제작에 관한 각서

IPS(Integrated Process Systems,이하, 갑이라 한다)와 (숙)-살-간----(이하, 을이라 한다)는, 3-605년 -/월 3-6일부로 갑의 요구사항에 근거로해서 을이 제작한 태양전지생산용장치의 부분품에 관해서 이하와 같이 각서로 정한다.

제 1조 (대상 부분품)

대상은 태양전지생산용생산설비 RIE(Reative Ion Etching 장치)의 부분품으로 한다.

제 2조 (납기)

갑은 상기 장치를 소자업체공장에 반입해서 분해,조립,조정을 완료해서 2005년 5월말까지 가동가능한 상태로 소자업체에 인도할수 있도록 을은 2005년 3월17일(1대),3월28일(4대)까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해야된다.

또, 을의 책임에 의한 납기지연이 발생한 경우는 을은 갑에 대해서 지연손실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손실금의 환산율에 관해서는 별도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3조 (납입전 검수)

을은 장치반입전에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개월상당기간의 Running Test을 실시해서 초기성능에 관해서 사전에 갑의 승낙을 득하는 것으로 한다. 필요한 tool들은 사전에 양자가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한다.

제 4조 (서비스 체계)

을은 갑의 기술요원이 소자업체에 상주하기 때문에 장치가 error가 발생할 경우 적극 수리할수 있도록 지원하며 만약 갑의 기술요원이 장치error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을의 기술요원이 소자업체에 가서 수리하는 것으로 한다. 기간은 소자업체에 장치를 Sign off후 1년간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양자 합의해서 기간을 변경(단축,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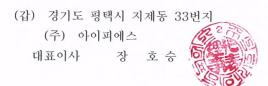
제 5조 (부속 자료내용)

을은 납입한 부분품에 관해서 양자 합의하에 하기의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취급설명서(장치 및 사용기기의 설명서,보증서)
- 기계조립도,기계부품도,배관계통도,전기배선도, I/O List, PLC PGM, 기억 메모리, 사용부품표,
- 기타 갑이 각설비를 가동,유지하기위해 필요한 도면 또는 서면

제 6조 (동부분품을 이용한 설비의 판매제한)

- 1) 계약성립후, 2년간 을은 전체 또는 분리가능한 일부분에 대해서, 본설비와 동일한 또는 목적,기능이 유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시 되는 설비를 제 3자에게 제공할수 없다. 계약성립후 3년이후 5년까지는 을은 갑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락을 득한 후 제 3자에게 제공할수있는 것으로 한다.
- 2) 계약 성립후, 2년간은 갑은 본설비와 동일한 설비의 제작을 계획할 경우, 을를 제 1우선 공급자로서 우대하며, 을이 제조한 설비을 최우선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다. 단, 을이 갑의 요청을 만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타사에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



(을) 경기도 화성시 등단면 영소기 334-4 대표이사 정-명-12



